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

(노승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2일

발 의 자 : 노승재, 김춘례, 김인호,
경만선, 박기재, 오한아,
안광석, 문병훈, 김기덕,
김광수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문화예술교육의 정의(안 제2조)

나.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, 기본계획 등을 수립·실시하도록 함(안 제5조~제6조)

라.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'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'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(안 제7조~제9조)

마.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'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' 지정 및 지원근거를 규정함(안 제10조~제12조)

바.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,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교육”이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교육시설”(이하 “교육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문화예술교육단체”(이하 “교육단체”라 한다)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4조(기본원칙)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·향유권의 증진,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.

② 모든 시민은 나이, 성별, 장애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여건, 신체적 조건,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자치구,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시교육청”이라 한다)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·다른 지방자치단체·시·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(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)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기본계획 수립
2. 시 및 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·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8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, 부위원장은 시교육감이 지

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, 문화예술교육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 2.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, 교
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하는 사람,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람 중
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②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
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
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,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
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문화예술교육
담당 과장이 된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다.

제9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
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
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
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「서울특별시
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
할 수 있다.

제10조(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)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 문화
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
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)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·축제·학예회·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·전시·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2조(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)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, 축제,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노인·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·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3조(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)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)를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.

- ② 교육센터는 시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·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7조(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), 제10조(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), 제11조(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), 제12조(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), 제13조(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)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나
-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(제7조) 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〈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내용〉

조례(안)	기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내용	예산(천원)
제10조(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)	○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	926,000
제11조(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)	○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	5,978,000
제12조(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)	○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	800,000
	○ 꿈다락 토요문화학교	721,000
	○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	520,000
	○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	200,000
제13조(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)	○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	1,500,000
합계		10,645,000

- ※ 첨부 1. 2020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계획 1부
- 첨부 2. 2020년 지역밀착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계획 1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○ 총 비용 ≙ 30,600천원(연평균 6,120천원)

(단위: 천원)

구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(제7조)	6,120	6,120	6,120	6,120	6,120	30,600
	소계(b)	6,120	6,120	6,120	6,120	6,120	30,600
총 비용(b-a)		6,120	6,120	6,120	6,120	6,120	30,600

다. 비용추계 전제

-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11명(담당공무원 3명, 위촉위원 8명)으로 구성하고, 회의는 연4회(분기별 1회) 개최를 전제로 비용추계
- 물가상승률은 미반영

라. 비용추계 산식

○ 비용 추계 합계액 ≙ 총 30,600천원 (연 평균 6,120천원)

- 협의회 설치 및 운영 : 총 30,600천원 (연 평균 6,120천원)

· 연간 협의회 참석수당 : 150천원 × 8명 × 4회 = 4,800천원

· 연간 업무추진경비 : 30천원 × 11명 × 4회 = 1,320천원

※ 협의회 참석수당은 공무원 3명을 제외한 8명, 업무추진경비는 11명을 기준으로 추계

※ 회의참석 수당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, 협의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

※ 업무추진비 단가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별표1)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☎ 02-2180-7934

e-mail : yab0217@seoul.go.kr